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1호	300	500	700
나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1호	100	200	300
다. 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2호	100	200	300
라.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 업무를 중단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2호	300	500	700

마.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3호	100	200	300
바. 법 제23조제2항(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3호	400	600	900
사. 법 제23조제4항 전단(법 제2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4호	300	500	700
아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5호	500	700	1,000
자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,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4호	100	200	300